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”을 “정부출연연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
4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”을 “정부출연연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(중전의 제4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”을 “정부출연연구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

은 조 제2항 중 “위탁한”을 “업무를 위탁한”으로 한다.

1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
3. 「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
4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

제22조제1항 중 “안전관리종합계획”을 “안전관리 종합계획”으로, “9월 30일”을 “11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품질인증 업무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3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<신설> ② (생략)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	제10조(품질인증 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정부출연연구기관 <삭제> 3. 「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. (생략)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(생략) 제16조(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	터 운영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정부출연연구기관 <삭제>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3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
---	---

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	-----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-----
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	-----
있다.	----
<신 설>	1.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
	식생활안전관리원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	2. -----
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	-----
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	----- 정부출연연구기관
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	
구기관	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	<삭 제>
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	
<신 설>	3. 「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
	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
	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
	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
	4.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
	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
	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	또는 단체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	② -----
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	----- 업무를 위탁한 -----
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	-----.
제22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	제22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
립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	립 등) ① -----

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	-----
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(이	----- 안전관리 종합계획--
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이 확	-----
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	-----
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	----- 11월 30일-----
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	-----
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